

식용란 선별포장업 관련 Q&A

 식품의약품안전처

2018. 7.

 식품의약품안전처

식용란 선별포장업 관련 Q&A CONTENTS



[영업허가]

1.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은 어떻게 받나요? 04
2. 달걀을 판매하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필요한가요? 04
3.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? 05
4.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위해서 HACCP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05

[영업시설]

5.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설비(검란기, 파각검출기, 중량선별기, 세척기, 건조기, 살균기 등)를 모두 구비해야 하나요? 06
6.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에서 세척기는 물세척만을 의미하나요? 06
7.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 온도기준이 있나요? 06

[식용란의 유통]

8.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달걀은 모두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·포장처리 되어야 하나요? 07
9. 달걀은 모두 냉장유통 해야 하나요? 07

[식용란의 검사]

10. 모든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? 08
11.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해야 하는 달걀에 대해 제3자가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보관한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? 08
12.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의 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혜택이 있나요? 09
13. 식용란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? 09
14. 식용란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, 주기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 10

[달걀의 껍데기 표시]

15.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? 11
16.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은 무엇인가요? 11

[기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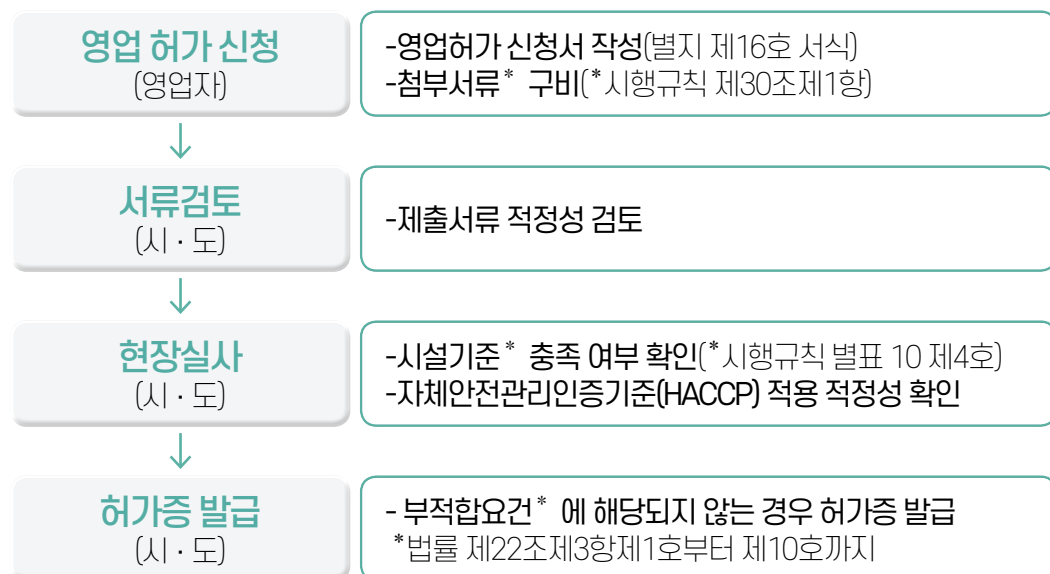
17.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? 12
18. 포장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? 13
19.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 경영자(농장주)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13
20.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경영자가 달걀을 판매할 수 있나요? 14
21.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달걀을 수집할 수 있나요? 14
22. 달걀을 출하하는 농장주가 달걀을 냉장보관한 경우 출하 전 준수사항이 있나요? 14
23.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·포장 처리되지 않은 달걀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? 15
24.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고자 하는데,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나요? 16

[부록]

- [붙임 1]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관련 시험·검사기관 현황 17
- [붙임 2] 문의처 19

Q1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은 어떻게 받나요?

-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작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·도 축산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영업 허가절차 진행하도록 함
- 영업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음



Q2 달걀을 판매하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필요한가요?

-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수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달걀을 판매하려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함

Q3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?

-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 허가·등록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 시설 중 종란이나 달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식용란선별포장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음

* 외부에서 달걀을 반입하여 선별·포장하려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함.

- 다만, 그 식용란선별포장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은 분리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없어야 함



Q4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위해서 HACCP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을 운영해야 하므로 영업허가 신청시 작업장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하고 허가신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할 것임
- 식용란선별포장업의 HACC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식약처 고시)”에서 확인 가능
- HACCP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식약처(식품안전표시인증과, 043-719-2860) 또는 관할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Q5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설비(검란기, 파각검출기, 중량선별기, 세척기, 건조기, 살균기 등)를 모두 구비해야 하나요?

-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에는 정해진 검란기, 파각검출기, 중량선별기, 세척기, 건조기, 살균기 등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,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화시설로 설치해야 함
- 다만, 물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조기 설치 불필요함

Q6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에서 세척기는 물세척만을 의미하나요?

- 세척은 달걀 표면의 이물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영업자가 달걀의 오염상태 등을 고려하여 물, 솔 또는 공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음

Q7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 온도기준이 있나요?

- 냉장된 달걀을 처리하는 경우 15°C를 유지해야하는 반면, 냉장하지 않은 달걀을 처리하는 경우 상온(15~25°C)을 유지 하여야 함
- 따라서 작업장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

Q8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달걀은 모두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·포장처리 되어야 하나요?

- 원칙적으로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쳐 선별·포장 처리되어야 함. 다만, 아래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고 달걀을 판매할 수 있음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HACCP 인증을 받고 직거래*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

- * 1) 최종 소비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
- 2)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
- 3)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

-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·포장 처리된 수입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

Q9 달걀은 모두 냉장유통 해야 하나요?

- 물세척한 달걀은 냉장유통 의무화*에 따라 냉장으로 보존·유통해야 함

* 달걀을 물세척하는 경우 30°C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°C이상의 깨끗한 물(100~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)로 물세척하여야 하고, 물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 유통하여야 함(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약처 고시 제2017-24호, '17.4.14 개정, '19.1.1부터 시행))

식용란의 검사

Q10 모든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?

- 식용란의 검사 의무대상자는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직접 달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이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달걀을 구입하는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됨

Q11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해야 하는 달걀에 대해 제3자가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보관한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?
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해야 하는 달걀(가축사육시설과 산란일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)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검사성적서를 보관함으로써 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함
(★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-1872, '18.4.27)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등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2조(축산물의 검사) 또는 제19조(출입·검사·수거)에 따라 실시한 검사
-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경영자(농장주)의 검사의뢰를 받아 실시한 검사

식용란의 검사

Q12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의 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혜택이 있나요?
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·운반·진열하고 있는 식용란이 잔류허용기준 위반*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식용란의 검사를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인정을 받으면 영업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 할 수 있음

* 행정처분기준 : 경고(1차), 영업정지 5일(2차), 영업정지 10일(3차)

Q13 식용란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?
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개별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됨
- 검사항목 전부 미실시: 영업정지 7일(1차)
- 검사항목 50퍼센트 이상 미실시: 영업정지 5일(1차)
- 검사항목 50퍼센트 미만 미실시: 경고(1차)
- 검사기록서 미보관(2년): 영업정지(5일)
- 검사결과 위반사항* 미보고: 영업정지 1개월(1차)

* 법률 제4조제5항·제6항 및 제33조 위반

Q14 식용란의 검사항목, 주기,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의 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“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”(식약처 고시 제2018-36호)에서 정하고 있음
 - 검사대상: 가축사육시설별
 - 검사주기 적용시점: 산란일
 - 검사항목: 항생제(엔로프록사신, 시프로플록사신, 설파제), 농약(피프로닐, 비펜트린, 플루페녹수론, 에톡사졸, 피리다벤)
 - 검사주기: 6개월마다 1회

※ [붙임 1] (17쪽) ;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관련 시험·검사기관 현황



Q15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달걀의 껍데기에는 고유번호, 사육환경번호, 산란일을 표시하여야 함
 - ① 고유번호('18.4.25부터 시행)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증에 기재된 번호(5자리)
 - ② 사육환경번호('18.8.23부터 시행): 1(방사사육), 2(축사내 평사), 3(개선된 케이지 0.075㎡/마리), 4(기존 케이지, 0.05㎡/마리)
 - ③ 산란일('19.2.23부터 시행): 알을 낳은 날을 적되,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음

산란일자(4자리)+생산자 고유번호+사육환경번호

산란일은 "△△○○(월일)"의 방법으로 표시
(예시: 10월 2일 1002, 4월 2일 0402)

* 달걀 껍데기 표시(10자)를 1줄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2줄로 표시 가능

1줄표시 1002M3FDS2

2줄표시 1002
M3FDS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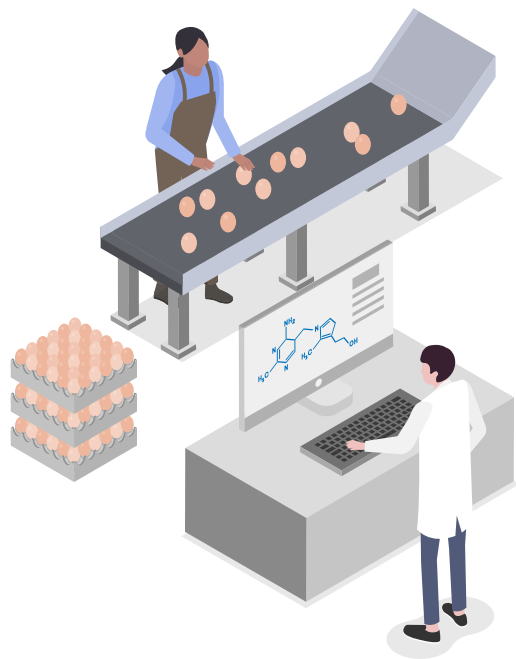


Q16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?
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달걀 껍데기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개별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됨
 -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(산란일, 고유번호, 사육환경번호)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: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
 -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 중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: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(1차)

Q17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데,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?

-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별도의 영업임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규위생교육(6시간)을 받아야 함
-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매년(3시간)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
- 교육 생략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
 -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규위생교육 생략
 -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규위생교육 생략
 -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



Q18 포장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?

- 달걀은 포장대상 축산물이므로 반드시 포장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포장된 달걀은 포장을 훼손하여 재포장하는 것은 불가함
-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달걀의 재포장이 가능함
 -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·포장이 되거나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
 -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·포장이 되거나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식품접객업, 알가공장, 집단급식소 등 영업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
 -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벌크 단위(300개 이상 단위를 말함)로 포장한 달걀을 구입한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(★가정용 달걀은 해당사항 없음)

Q19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 경영자(농장주)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달걀을 출하하는 가축사육업 경영자(농장주)는 달걀의 산란일·세척방법·냉장보관 여부, 사육환경, 산란주령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해당 농장주와 거래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그 거래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
- 농장주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함

Q20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경영자가 달걀을 판매할 수 있나요?

-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닭 사육업자의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달걀을 판매 할 수 있음

Q21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달걀을 수집할 수 있나요?
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「축산법」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가축 사육시설에서 생산한 달걀을 수집할 수 있음
- 수집한 달걀을 판매하기 위해서 해당 영업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은 표시하고, 자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(고유번호, 사육환경번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)

Q22 달걀을 출하하는 농장주가 달걀을 냉장보관한 경우 출하 전 준수사항이 있나요?

-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로 출하하려는 농장주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하여야 함
- 해당사항을 위반한 경우 농장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
Q23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·포장 처리되지 않은 달걀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?

- 2019년 4월 25일부터는 알가공업, 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달걀이 아닌 가정용으로 유통·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·포장 처리하여야 함 (Q8. 참고)
- 따라서,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·포장 과정을 거쳐서 납품해야 함.
- 즉,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·포장된 달걀만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선별·포장하지 않은 달걀을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

*행정처분기준 : 영업정지 7일(1차), 영업정지 15일(2차), 영업정지 1개월(3차)



Q24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고자 하는데,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나요?

- 농림축산식품부는 ①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을 통해 규모화·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의 신축 또는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②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을 통해 계란 집하·선별·포장·가공·등급판정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.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재지 시·군·구청 축산과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(사업 시행지침을 참고).

①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

- 사업대상자: 계란유통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·개보수하려는 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 등 조합 또는 법인
- 지원대상: 계란의 집하, 선별, 세척, 포장, 보관,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- 지원조건: 국고보조금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- 사업규모: (신축) 60~100억, (증축 또는 개보수) 10~30억

②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(계란 가공장·집하장 및 등급시설, 계란 등급시설 운영자금)

- 사업대상자: 산란계농가, 식용란수집판매업자, 계란유통센터
- 지원대상: 계란 집하·선별·포장·가공·등급판정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
- 지원조건
 - (1) 계란 가공장·집하장 및 등급시설: 연리 2~3%(생산자 2%, 일반업체 3%) 또는 변동금리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(단,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, 융자 70%, 자부담 30%
 - (2) 계란 등급시설 운영자금: 연리 2.5~3%(생산자 2.5%, 일반업체 3%) 또는 변동금리, 1년 거치 일시상환, 융자 100%

• 지방자치단체 시험·검사기관

기관명	소재지	문의(대표전화)
서울 보건환경연구원	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	T.02-570-3330~3
부산 보건환경연구원	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20 (만덕동 945-5)	T.051-330-6141
대구 보건환경연구원	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(지산동)	T.053-760-1255
인천 보건환경연구원 (동물위생시험소)	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2	T.032-440-5423~6
광주 보건환경연구원	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	T.062-613-7505
대전 보건환경연구원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	T.042-270-6800
울산 보건환경연구원 (동물위생시험소)	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청룡들로 6	T.052-229-5255
세종 동물위생시험소	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	T.044-301-3825
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3	T.031-8008-6300
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	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	T.033-248-6625
충북 동물위생시험소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39	T.043-220-6231~4
충남 동물위생시험소	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	T.041-635-7026
전북 동물위생시험소	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히숲길 18-4	T.063-290-5395
전남 동물위생시험소	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	T.061-430-2114
경북 동물위생시험소	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(학정동 859-3 번지)	T.053-326-0011
경남 동물위생시험소	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	T.055-254-3013
제주 동물위생시험소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941	T.064-710-8523

• 지정 시험·검사기관 (민간) ['18.7. 기준]

지정 번호	기관명	소재지	분야	시험·검사항목	유효기간
제6호	한국식품산업 협회부설 한국식품과학 연구원*	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(포일동) T.02-3470-8200 Fax.02-523-2072	축산물 (수입, 자가품질 위탁)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동물용의약품	'20.11.25.
제12호	농협 경제지주(주) 축산연구원	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-20 T.031-659-1336 Fax.031-659-1399	축산물 (식육가공품 (식용우지, 식용돈지 제외), 알가공품에 한함)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동물용의약품 (합성호르몬 제제외), 잔류농약	'20.12.25.
제20호	(주)한국분석 기술연구원	부산광역시동구대영로 267해광빌딩 301호 T.051-466-1231 Fax.051-466-3298	축산물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	'20.11.25.
제26호	(사)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 연구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, B동 A-B03호, B101~102 호, B301~302호 T.031-628-2400 Fax.031-628-0400	축산물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	'21. 1.15.
제33호	한국식품산업 협회부설 한국식품 과학연구원 부산지소	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누리생활관 내 T.051-628-7915 Fax.051-628-7953	축산물 (조제유류 제외)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동물용의약품	'18.11. 4.
제62호	푸드머스 에이치앤에스 연구소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T.031-330-2450 Fax.031-333-2539	축산물	미생물, 잔류동물용의약품	'21. 1.23.
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(시설기준, 행정처분 등)
: 043-719-3211, 3217, 3224 (농축수산물정책과)

• HACCP
: 043-719-2860 (식품안전표시인증과)

• 자가품질검사
: 043-719-3257 (농축수산물안전과)

• 지원사업
: 044-201-2339 (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)